2020장공련002호

2020년1월30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회원 여러분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전성분표시명칭위원장 가타키리 타카유키

약사위원장 아기노 가즈오

전무이사 야마모토 준지

야자유 및 팜 핵유 유래성분의 화장품 표시명칭에 대해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이번 2019년 9월 11일 약생발 0911 제4호 “<의약부외품 원료규격 2006>의 일부개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장 통지에 의해, 야자유 유래성분의 기원에 팜 핵유 유래성분을 포함시키는 등의 개정이 있었는데,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의 자발적 기준으로서 2006년 4월에 도입한 약용화장품 등의 의약부외품 성분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화장품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의약품 의료기기법에 근거하는 성분표시가 의무화되어, 여러분께서는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의 “화장품 성분표시명 리스트”를 이용하여 성분표시를 실시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화장품의 표시명칭은 이른바 INCI명의 일본어 번역을 기본으로 작성하고 있어, INCI명에서는 야자유 유래성분과 팜 핵유 유래성분은 유래가 다른 것으로 별도 표시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표시명칭도 그에 따라 별도 표시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성분의 유래를 다루지 않고 구조에만 주목한 “트리 지방산(C10-18) 글리세릴”과 같은 표시명칭도 존재합니다.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회원 여러분은 기존 표시명칭의 활용 혹은 새로운 표시명칭을 등록함으로써, 적절하게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 의약부외품 원료규격의 일부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야자유(야자나무)가 아닌 팜 핵유(기름야자)를 이용하여 야자유 유도체 혹은 야자유 지방산 유도체가 제조된 상황이나 원료의 로트별 그 배합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표시명칭에 “야자”나 “야자유” 혹은 야자유 유래성분으로 “코카”나 “코코”가 붙은 성분에 대해서는 지방산 조성이 야자유와 거의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아래와 같이 취급하기로 했으므로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래 취급은 잠정적인 대응을 위해, 보다 적절한 표시 명칭을 이용하여 성분을 표시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아래 사항을 연락 드립니다.

1. 이번 대응은 화장품의 성분표시에 관한 것이므로,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는 2020년 4월 30일부터 홈페이지에 별첨 내용을 게재할 것.

2.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추측되기 때문에 주의할 것.

이상 부탁드립니다.

이상

아래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가 공표하는 “화장품의 성분표시 명칭 리스트”에서, “야자”나 “야자유”가 붙은 표시명칭 및 야자유 유래성분에서 “코카”나 “코코”가 붙은 표시명칭의 정의에는 당분간 지방산 조성이 야자유와 거의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팜 핵유를 유래로 하는 것도 포함하기로 간주하고, 해당 표시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다음 1부터 4에 열거하는 것은 이 취급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 표시명칭에 “야자가 붙은 성분 중 아래 성분

아사이 야자, 아메리카 기름 야자, 수수 야자, 이테 야자 및 대추 야자를 표시명칭으로 이용한 성분

2. 표시명칭에 “코카”가 붙은 성분 중 아래 성분

알토칼프스라코카나무 엑기스, 살코카프노스크라시포리아칼스 용해질, 솔라늄리코칼품 과일 엑기스, 미시마사이코칼스 배양 엑기스

3. 표시명칭에 “코코”가 붙은 성분 중 아래 성분

코코 야자 엑기스, 코코 야자 과일, 코코야자 과일 엑기스, 코코 야자 과즙, 코코 야자 껍질, 코코 야자 화당, 코코 야자수, 사카로미세스/코코 야자 화밀 발효액, 시노프시스 쿠에브라 코코로라드 나무 엑기스

4. 원료의 제조면에서 상기 대응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분

야자유, 기름 야자 과일 엑기스

이상